Z - 25 - 202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준수에 관한 지침

2022. 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한국안전문화진흥원
- 제·개정 경과
 - 2022년 12월 리스크관리분야 표준제정위원회(제정)
- 관련규격 및 자료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
 -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 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 본이 있을 경우 해당 최근 개정 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표일자 : 2022년 12월 31일

제 정 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KOSHA GUIDE Z - 25 - 202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준수에 관한 지침

1. 목 적

신기술의 도입과 근로자 보건의 질(미세먼지 등) 개선 욕구의 변화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의 내용도 변화하게 만든다. 더구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조직의 책임' 항목과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 항목은 이러한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본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마련되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과 준수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ISO 또는 KOSHA-MS 기반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실무담당자 및 내부 심사원 그리고 사업주에 적용하며, 그리고, 사업주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행정관리인의 업무역량 증진에도 적용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안전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안전 경영 위원회'와 '안전 근로 협의체'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에도 적용된다.

3. 용어의 정의

- 3.1 조직: 조직의 개념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 회사, 법인, 상사, 기업, 당국(공공기관), 파트너십, 협회, 자선단체 또는 기구, 혹은 이들이 통합이든 아니든 공적이든 사적이든 이들의 일부 또는 조합도 포함되어 정의된다.
- 3.2 요구사항: 요구사항(requirement)이란 명시적인 니즈 또는 기대로 정의되나, 일반적으로 관습 또는 일상적인 관행을 의미한 요구 또는 기대도 포함된다.
- 3.3 안전보건 법적 요구사항: 사업장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련 법규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 안전보건 시행규칙, 산업안전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 험 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행정 규칙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지침 등이 있다.

Z - 25 - 2022

3.4 기타 요구사항: 법적 요구사항 이외에 사업장(조직)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련 기타 요구사항으로 정의된다.

4. 안전보건관리규정 적용 법규

- 4.1 산업안전보건법
- 4.1.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산업안전보건법 제 25조)
 - (1)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다)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라)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2)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3)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안 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1.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

Z - 25 - 2022

- (1)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4.1.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산업안전보건법 제 27조)
 - (1)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 4.1.4 다른 법률의 준용(산업안전보건법 제 28조)
 - (1)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4.2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4.2.1 안전관리 규정 작성(제 13조)
 - (1)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 4.2.2 임원의 직무(제 20조)
 - (1) 공공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본 지침에 따른 안전관리 책무와 그 밖에 근로자의 안 전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 감독하여야 한다.
- 4.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4.3.1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Z - 25 - 2022

<표 1>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사업의 종류	상시 근로자 수
1. 농업	300명 이상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 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00명 이상

4.3.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

(1) 총칙

-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2) 안전 · 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 (가)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
-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 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Z - 25 - 2022

-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마)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 (3) 안전 · 보건교육
- (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나)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 (4) 작업장 안전관리
 - (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나) 기계 · 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다)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 (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 (마)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 (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 (사) 안전표지 · 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 작업장 보건관리
- (가)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Z - 25 - 2022

- (다)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라)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 (마) 보건표지 · 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6)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 (가)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나)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다)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가)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 (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8) 보칙
 - (가)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징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나) 안전·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의 사항: 사업장의 규모·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4.4 근로기준법

4.4.1 제76조(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Z - 25 - 2022

- 4.4.2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 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4.3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은 취업규칙의 일부로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

5. 안전보건관리규정 해설

- 5.1 근로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이해
- 5.1.1 근로자 이외에 이해관계자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1) 법적 및 규제 당국 (지방, 지역, 주/도, 국내 또는 국제)
 - (2) 모기업
 - (3) 공급자, 계약자 및 하도급 업자
 - (4) 근로자 대표
 - (5) 근로자 조직 (노동조합) 및 고용주 조직
 - (6) 오너, 주주, 고객, 방문객, 지역 사회 및 조직과 일반 대중의 이웃
 - (7) 고객, 의료 및 기타 지역 사회 서비스, 언론, 학계, 비즈니스 협회 및 비정부기구 (NGO)
 - (8) 산업 안전보건 조직과 산업 안전 또는 건강관리전문가

Z - 25 - 2022

- 5.2 기타 요구사항
- 5.2.1 기타 요구사항에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1) 조직의 요구사항
 - (2) 계약 조건
 - (3) 고용 계약
 - (4) 단체협약 조항
 - (5) 이해관계자와의 합의
 - (6) 보건 및 안전 당국과의 합의
 - (7) 비 강제적 표준, 합의 표준 및 지침
 - (8) 자발적 원칙, 실무 규범, 기술규격, 허가사항
 - (9) 조직 또는 모 회사의 공약 등

Z - 25 - 2022

[부록 A] 안전보건 관리 규정 목차 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4조(안전보건 방침)

제5조(재해 예방 의무)

제6조(도급공사의 안전보건 관리)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7조(안전보건 조직)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9조(관리감독자)

제10조(안전관리자)

제11조(보건관리자)

제12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등)

제13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제1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제1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결과 등의 처리)

제16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17조(작업지휘자)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8조(안전보건 교육계획 수립)

제19조(정기 안전보건교육)

제20조(신규 채용 시 교육)

제21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제22조(특별 안전보건교육)

제23조(물질 안전보건교육)

제24조(직무교육)

Z - 25 - 2022

제25조(안전보건 교육 강사)

제26조(교육 방법)

제27조(기록・보존)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28조(안전보건 계획수립 및 실행)

제29조(전기설비 안전)

제30조(안전 인증 및 자율 안전 확인의 신고)

제31조(안전 검사)

제32조(안전 검사의 주기)

제33조(표준작업 안전 수칙 작성 및 준수)

제34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제35조(작업 중지)

제36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제37조(안전보건 점검 및 순찰)

제38조(안전 작업 허가서 발급 및 이행)

제39조(안전보건진단)

제40조(교통재해 예방)

제41조(비상조치 계획)

제42조(피난 및 대응훈련)

제43조(비상 연락 시스템 구축)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44조(작업환경측정)

제45조(근로자 건강진단)

제46조(건강 진단의 실시 시기 등)

제47조(유해 물질 취급 및 관리)

제48조(안전보건 보호구)

제49조(작업복 지급 및 착용)

제50조(자격 또는 면허에 의한 취업 제한)

제51조(근로시간 연장 제한)

제52조(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Z - 25 - 2022

제53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제54조(근골격계 질환 예방) 제55조(근로자 건강 유지 및 증진) 제56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57조(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제58조(사고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제59조(재해 발생 현황분석 및 종합 대책 수립)

제7장 위험성 평가

제60조(위험성 평가 계획수립) 제61조(위험성 평가 교육) 제62조(위험성 평가 실시 및 실행) 제63조(위험성 평가 주기) 제64조(위험성 평가 문서화)

제8장 보칙

제65조(안전보건 제안제도) 제66조(포상) 제67조(징계) 제68조(문서 보존 연한) 제69조(변경 절차)

Z - 25 - 2022

[부록 B]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 규정 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XXXXX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원의 문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4조에 따른 상임이사(대표이사와 상임감사 위원 제외)에게 적용한다.
- 제3조(임원의 안전보건관리 책무) XXXXX의 임원은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며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른 안전 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소속 직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제2장 문책

- 제4조(문책의 사유)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안전보건 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보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와 관련한 임원을 문책할 수 있다. 다만, 그 임원이 제3조에서 정한 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 재해
 - 2.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중대 산업사고
 -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고
 -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산업재해 또는 사고
- 제5조(문책의 종류와 효과) 문책은 해임·연임제한·업무배제·기본연봉 감액·경고 ·주의로 구분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해임
 - 2. 연임제한
 - 3. 업무배제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출근 및 직무정지를 하고, 기본연봉은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4. 기본연봉 감액: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임원보수규정」에 따른 기본연봉 월액의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KOSHA GUIDE Z - 25 - 2022

- 5. 경고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 명의의 서면으로 각성을 촉구하고 당사자는 과오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6. 주의 :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대표이사 명의의 서면으로 각성을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 **제6조(문책의 절차)** ① 대표이사는 임원에 대한 문책을 하는 경우 지체없이 위원회에 부의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그 의결 결과에 따라 문책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에서 임원에 대한 문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와 문책에 필요한 사항(문책의 요구, 심의·표결, 항고, 문책의 재심의 또는 재의결, 문책처분의 집행, 문책의 시효, 포상자에 대한 문책감경, 문책의 면제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공사의 「인사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는 "문책"으로 본다.)

부칙 (2020.XX. XX)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 XX. XX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안전보건 사고부터 적용한다.

지침 개정 이력

□ 개정일 : 2021. 12. 29.

○ 개정자 : 한국안전문화진흥원

○ 개정사유 : 가이드라인 고도화

○ 주요 개정내용

- 1. 목적 변경

- 2. 적용범위 변경

- '4.4 근로기준법' 추가